

배출가스 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가. 휘발유자동차 또는 가스자동차

1) 2006년 1월 1일 이후

| 차 종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 화 수 소 | | | 포름알데히드 | 측정방법 | |
|----------------------|------------------|--------------|-------------------|--------------|-----------|--------------|--------------|--------------|
| | | | 배기관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
| 경자동차 |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25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5g/km 이하 | CVS-75 모드 | |
| 소형승용· 화물자동차 | 가 |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25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0.005g/km 이하 |
| | 나 | 1.31g/km 이하 | 0.044g/km 이하 | 0.034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0.007g/km 이하 |
| 중형승용· 화물자동차 | 가 |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25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0.005g/km 이하 |
| | 나 | 1.31g/km 이하 | 0.044g/km 이하 | 0.034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0.007g/km 이하 | |
|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 1.5(0.4)g/ℳℳH 이하 | 3.5g/ℳℳH 이하 | 0.46(0.2)g/ℳℳH 이하 | 0g/1주행 | - | - | ND-13 모드 | |
| | 4.0g/ℳℳH 이하 | 3.5g/ℳℳH 이하 | 0.55g/ℳℳH 이하 | 0g/1주행 | - | - | ETC 모드 | |

비고 :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소형승용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안의 기준은 가스자동차에 적용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소형승용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고, 그 해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6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총 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 첫 해에서 3년을 유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비율 100%를 적용한다.

| 구분 | 적용기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이후 |
|------|------|--------|--------|--------|----------|
| 출고비율 | | 25% 이상 | 50% 이상 | 75% 이상 | 100% |

-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 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적용기간 |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 화 수 소 | | | 측정방법 |
|----------------------------------|---|-------------|--------------|--------------|--------|-----------|--------------|
| | | | | 배기관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가 | 1.06g/km 이하 | 0.043g/km 이하 | 0.025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
| | 나 | 1.31g/km 이하 | 0.062g/km 이하 | 0.034g/km 이하 | 0g/1주행 | 1g/테스트 이하 | |

- 비고 제8호의 적용기간 난 중 '가' 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할 수 있다.
-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ND-13 모드 또는 ETC 모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 차량 총중량이 4톤미만인 대형승용차·화물차는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 2009년 1월 1일 이후

| 차 종 |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 화 수 소 | | | 포름알데히드 | 측정방법 | |
|--------------------------------------|-----|--------------|---------------|----------------|--------------|-----------|---------------|--------------|-----------|
| | | | | 배기관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
|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기준1 | 가 | 2.11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47g/km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9g/km 이하 | CVS-75 모드 |
| | | 나 | 2.61g/km 이하 | 0.044g/km 이하 | 0.056g/km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11g/km 이하 | |
| | 기준2 | 가 |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25g/km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5g/km 이하 | |
| | | 나 | 1.31g/km 이하 | 0.044g/km 이하 | 0.034g/km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7g/km 이하 | |
| | 기준3 | 0.625g/km 이하 | 0.0125g/km 이하 | 0.00625g/km 이하 | 0g/1 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 |
| | 기준4 | 0g/km 이하 | 0g/km 이하 | 0g/km 이하 | 0g/1 주행 | 0g/테스트 이하 | 0g/km 이하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 4.0g/kWh 이하 | 2.0g/kWh 이하 | 0.55g/kWh 이하 | 0g/1 주행 | - | - | ETC 모드 | |

비고 :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은 위 표의 네 가지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적용하되, 자동차제작자별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이하 '배기관가스'라 한다)의 평균값은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이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배기관가스 평균값은 연간 25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47g/km, 연간 250대 초과 4,0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9g/km, 연간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0g/km를 각각 적용한다.

| 적용 대상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6월까지 | 2012년 7월부터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경자동차, 소형승용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 0.025g/km 이하 | 0.025g/km 이하 | 0.025g/km 이하 | 0.025g/km 이하 | 0.024g/km 이하 | 0.024g/km 이하 | 0.023g/km 이하 | 0.022g/km 이하 |
|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다목적형소형승용자동차 | 0.031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31g/km 이하 | 0.029g/km 이하 | 0.029g/km 이하 | 0.027g/km 이하 | 0.027g/km 이하 |

4. 3호의 제작사별 배기관가스 평균값의 산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Σ(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배기관가스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배기관가스 배출값)】 ÷ 전체출고량

5. 4호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계산시 배출기준별 배기관가스 기준값은 기준 1, 2의 경우 '가' 항의 배기관가스 기준값을 사용한다.

6. 4호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계산시 하이브리드 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자동차제작자가 3호에 규정된 배기관 가스 평균값 기준 이내로 달성한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그 차이분을 다음 해 이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연도 배기관가스 평균값 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배기관가스 평균값)) × 전체출고량

8. 7호의 규정된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에는 100%, 2년째는 50%, 3년째는 25%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9. 자동차제작자가 3호에 규정된 배기관가스 평균값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7호에 따라 산출한 차이분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10. 2012년 7월 이후 기준에 의한 배기관가스 평균값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초과분에 한해 이를 2014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 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대상차종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 화 수 소 | | | 포름알데히드 | 측정방법 |
|------------------------------|--------------|----------------|---------------|--------|-----------|---------------|-----------|
| | | | 배기관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 | |
|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0.625g/km 이하 | 0.01875g/km 이하 | 0.0125g/km 이하 | 0g/1주행 | 2g/테스트 이하 | 0.0025g/km 이하 | CVS-75 모드 |

15.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6. 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4호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계산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 기 준 | 탄화수소(배기관 가스) | 기 준 | 탄화수소(배기관 가스) |
|------|--------------|------|--------------|
| 기준 1 | 0.037g/km | 기준 3 | 0.005g/km |
| 기준 2 | 0.019g/km | 기준 4 | 0g/km |

참고 자료

17.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 부터 기준1을 적용한다
1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고 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차량 총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1. 마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목(2009년 1월 1일 이후 기준)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나. 경유사용자동차

1) 2006년 1월 1일 이후

| 차종 | 구분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입자상 물질 | 매연 | 측정방법 |
|-------------------------|------------------------|-------------|-------------|--------------|--------------|--------------------------------|------------------|
|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 | 0.50g/km 이하 | 0.25g/km 이하 | 0.30g/km 이하 | 0.025g/km 이하 | 10%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
|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 RW ≤ 1,305kg | 0.50g/km 이하 | 0.25g/km 이하 | 0.30g/km 이하 | 0.05g/km 이하 | 10% 이하 | |
| | 1,305kg < RW ≤ 1,760kg | 0.63g/km 이하 | 0.33g/km 이하 | 0.39g/km 이하 | 0.04g/km 이하 | 10% 이하 | |
| | RW > 1,760kg | 0.74g/km 이하 | 0.39g/km 이하 | 0.46g/km 이하 | 0.06g/km 이하 | 10% 이하 | |
|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 | 1.50g/km 이하 | 3.5g/km 이하 | 0.46g/km 이하 | 0.02g/km 이하 | 10% 이하 K=0.5m ⁻¹ | ND-13 모드 |
| | | 4.0g/km 이하 | 3.5g/km 이하 | 0.55g/km 이하 | 0.03g/km 이하 | - | ETC 모드 |

- 비고 : 1.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 중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며,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차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9. 원동기 전부하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유량 (ℓ/sec) | K수치 (m-1) | 유량 (ℓ/sec) | K수치 (m-1) | 유량 (ℓ/sec) | K수치 (m-1) |
|------------|-----------|------------|-----------|------------|-----------|
| 42 | 2.26 | 95 | 1.535 | 150 | 1.225 |
| 45 | 2.19 | 100 | 1.495 | 155 | 1.205 |
| 50 | 2.08 | 105 | 1.465 | 160 | 1.19 |
| 55 | 1.985 | 110 | 1.425 | 165 | 1.17 |
| 60 | 1.90 | 115 | 1.395 | 170 | 1.155 |
| 65 | 1.84 | 120 | 1.37 | 175 | 1.014 |
| 70 | 1.775 | 125 | 1.345 | 180 | 1.125 |
| 75 | 1.72 | 130 | 1.32 | 185 | 1.11 |
| 80 | 1.665 | 135 | 1.30 | 190 | 1.095 |
| 85 | 1.62 | 140 | 1.27 | 195 | 1.08 |
| 90 | 1.575 | 145 | 1.25 | 200 | 1.065 |

2) 2009년 9월 1일 이후

| 차 종 | 구 분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입자상 물질 | 매 연 | 측정방법 |
|-----------------------------|------------------------|-------------|--------------|--------------|--------------|----------|------------------|
|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 | 0.50g/km 이하 | 0.18g/km 이하 | 0.23g/km 이하 | 0.005g/km 이하 | - | ECE-15 및 EUDC 모드 |
|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 RW ≤ 1,305kg | 0.50g/km 이하 | 0.18g/km 이하 | 0.23g/km 이하 | 0.005g/km 이하 | - | |
| | 1,305kg < RW ≤ 1,760kg | 0.63g/km 이하 | 0.235g/km 이하 | 0.295g/km 이하 | 0.005g/km 이하 | - | |
| | RW > 1,760kg | 0.74g/km 이하 | 0.28g/km 이하 | 0.35g/km 이하 | 0.005g/km 이하 | - | |
|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 · 화물차 | | 1.50g/ℓ 이하 | 2.0g/ℓ 이하 | 0.46g/ℓ 이하 | 0.02g/ℓ 이하 | K=0.5m-1 | ND-13 모드 |
| | | 4.0g/ℓ 이하 | 2.0g/ℓ 이하 | 0.55g/ℓ 이하 | 0.03g/ℓ 이하 | - | ETC 모드 |

- 비고 :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 ·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 · 화물차는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 · 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 · 화물 및 초대형승용 · 화물 자동차는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 · 화물 및 초대형승용 · 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ND-13 모드, ETC 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ND-13 모드는 THC로 측정하고 ETC 모드는 NMHC로 측정한다.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매연기준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 유량 (ℓ/sec) | K수치 (m-1) | 유량 (ℓ/sec) | K수치 (m-1) | 유량 (ℓ/sec) | K수치 (m-1) |
|------------|-----------|------------|-----------|------------|-----------|
| 42 | 2.26 | 95 | 1.535 | 150 | 1.225 |
| 45 | 2.19 | 100 | 1.495 | 155 | 1.205 |
| 50 | 2.08 | 105 | 1.465 | 160 | 1.19 |
| 55 | 1.985 | 110 | 1.425 | 165 | 1.17 |
| 60 | 1.90 | 115 | 1.395 | 170 | 1.155 |
| 65 | 1.84 | 120 | 1.37 | 175 | 1.014 |
| 70 | 1.775 | 125 | 1.345 | 180 | 1.125 |
| 75 | 1.72 | 130 | 1.32 | 185 | 1.11 |
| 80 | 1.665 | 135 | 1.30 | 190 | 1.095 |
| 85 | 1.62 | 140 | 1.27 | 195 | 1.08 |

● 배출가스 보증기간 (시행규칙 제63조 관련)

가.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 사용연료 | 자동차의 종류 | 적용 기간 |
|------|---------------------|------------------|
| 휘발유 | 경자동차 | 5년 또는 80,000km |
| | 소형 승용 | 10년 또는 160,000km |
| |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 10년 또는 160,000km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2년 또는 160,000km |
| 가 스 | 경자동차 | 5년 또는 80,000km |
| | 소형 승용 | 10년 또는 160,000km |
| |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 10년 또는 160,000km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2년 또는 160,000km |
| 경 유 | 경자동차 | 5년 또는 80,000km |
| | 소형 승용 | 5년 또는 80,000km |
| |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 5년 또는 80,000km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 2년 또는 160,000km |

- 비고 :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5.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교란 제6호와 같은 표 제2호마목의 비교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18 제4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 사용연료 | 자동차의 종류 | 적용 기간 |
|------|------------------------------|---------------------------------------|
| 휘발유 |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 10년 또는 192,000km |
| |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 2년 또는 160,000km |
| 가 스 | 경자동차 | 6년 또는 100,000km |
| |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 10년 또는 192,000km |
| |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 2년 또는 160,000km |
| 경 유 |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 10년 또는 160,000km |
| | 대형 승용차·화물차 | 6년 또는 200,000km |
| |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 7년 또는 500,000km |
| 전 기 | 모든 자동차 | 별지 제 30호 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 기간 |

- 비고 :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틀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5.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2년 또는 16만km로 한다.
 6.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 배출가스 관련부품 | 정비주기 |
|---|-----------|
|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 80,000km |
|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 160,000km |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합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는 6년 또는 10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 적용기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출고비율 | 25% | 50% | 75% | 100% |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